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189
----------	-------

제안연월일 : 2015. 7. .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발의자	발의일자	경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	2012. 6. 7.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2012. 6. 25.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2012. 7. 2.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	2012. 7. 23.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2012. 12. 31.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2013. 4. 11.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2013. 5. 10.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2013. 11. 6.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2013. 11. 21.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2013. 12. 18.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윤의원	2014. 3. 7.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의원	2014. 4. 15.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선의의원	2014. 6. 12.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의원	2014. 6. 13.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2014. 6. 13.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2014. 6. 30.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의원	2014. 9. 23.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2014. 12. 15.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대운의원	2015. 3. 10.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2015. 3. 13.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2015. 3. 19.	제332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15. 4.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2015. 6. 22.	제334회(임시회) 2015. 6. 23. 「국회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로 직접 회부

제332회(임시회) 제3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5. 6.), 제333회(임시회) 제4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5. 21.), 제5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5. 25.), 제334회(임시회) 제6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6. 11.), 제7차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5. 7. 1.)는 위 2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334회(임시회)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 7. 1.)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9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5. 7. 1.)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재외선거가 치러졌으나,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 중 56,456명만 투표에 참가하여 2.53%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는 바, 재외선거 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도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가능하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우편 등록을 허용하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재외선거인등이 귀국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투표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4월과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잦은 보궐선거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재정부담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한 해 두 차례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잦은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성을 해소함은 물론,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잦은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줄이려는 것임.

현재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는 후보자나 정당이 적어 시각장애인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선거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현행법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들이 선거공보를 보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바,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한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이 가능한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군인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인 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

고 수형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의 행사를 통한 수형자의 재사회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들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그 밖에 장애인 예비후보자와 비장애인 예비후보자 간의 평등한 선거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가 폐지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제2항, 제218조의5제1항 및 제218조의9제1항).

나.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되도록 하되, 특별자치시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조의

7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

다. 이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안 제18조제1항).

마.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되,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보궐선거등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203조제3항·제4항).

바. 승선이 예정된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

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함(안 제60조의2제9항 신설)

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받은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후보자로 등록한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 학력증명서 등만 공개함(안 제60조의2제10항 신설)

자.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4항 단서 및 제261조제3항).

차.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후단 신설).

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녹음기·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9조제10항 및 제256조제3항).
- 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함(안 제122조의2제3항)
- 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한 또는 후보자칸은 사이에 여백을 두도록 하고,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은 무효로 함(안 제151조제7항 및 제179조제1항).
- 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함(안 제158조제2항 후단 신설).
- 거.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3제13항 신설).
- 너. 선거일 투표참관인과 같이 사전투표참관인도 교대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조제4항).
- 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후보자가 신고한 개표참관인 외에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도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81조제5항 및 제11항)

러.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 착오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선거소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도록 함(안 제193조제2항, 제219조제1항 및 제2항).

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관을 경유하여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18조의5제1항).

버. 2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일괄하여 공고하도록 함(제218조의5제3항 후단 신설)

서. 재외선거의 투표는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6제1항·제3항 및 제4항).

어. 재외투표용지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

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218조의18).

저.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받고, 재외투표소 책임위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아 투표한 다음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함(안 제218조의19).

처.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국내의 투표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18조의25제1항).

커. 이 법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도록 함(안 제274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를 “주민등록표에”로 한다.

제8조의7제2항제1호 중 “도·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선거관리)

- ④ 이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廣域市長·道知事”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로 한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16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로 한다.

제16조(피선거권)

제18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選舉日”을 “선거일”로, “者는 選舉權”을 “사람은 선거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은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를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를 “주민등록이”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선하고 있는”을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으로,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

시밀리로 신고”를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 선장의”를 “선박 소유자(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해당 선박 선장의”로 한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52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1호 중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 한다.

제52조(등록무효)

제53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선거일 전 30일”로 한다.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의2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증명서류 기타”를 “증명서류,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

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5조제4항 전단 중 “작성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5조제9항 후단 중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66조제8항 전단 중 “제65조제4항”을 “제65조제4항(단서는 제외한

다)”로 한다.

제79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錄音器 또는 錄音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를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제6호가목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2호 중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점자형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선거공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1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

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58조의3제1항 전단 중 “기간”을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관리록의 작성·제출”을 “관리록의 작성·제출,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의 투표절차”로 한다.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용지를 미리 교부받은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때에 그 투표용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62조제4항 전단 중 “제161조제6항·제7항·제9항부터”를 “제161조제6항부터”로 한다.

제179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79조(무효투표)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제181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개표참관)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93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比

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로, “地域區市·道議員選舉”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제201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을 “4월 중 첫 번째”로, “각각 그”를 “그”로 한다.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203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第35條(補闕選舉 등의 選舉日)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舉등이”를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

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를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로 한다.

제2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번호

제21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공관을 둔 국가에서는 대사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일괄하여 공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 및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9제1항 전단 중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주소지”로 한다.

제218조의13제3항 중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8조의16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

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8의 조 제목“(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를“(투표용지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투표용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작성방법,”을 “투표용지 작성방법,”으로 한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 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

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제218조의1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① 재외선거인등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합·봉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5의 조 제목 “(무효투표)”를 “(재외투표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② 제218조의18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제219조제1항 중 “地域區市·道議員選舉”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地域區市·道議員選舉”를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와”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으로 한다.

제256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제261조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라목 중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自動車와 擴聲裝置에 標識”를 “제79조제6항 또는 제10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시”로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2.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제274조제1항 중 “선거기간 중”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218조의18제3항”을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궐선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은 제35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201조제5항, 제20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

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는 제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218조의4제1항·제2항 및 제218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제2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주민등록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p> <p>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생략)</p> <p>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p> <p>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p>	<p>제4조(인구의 기준) ----- ----- ----- <u>주민등록표에</u>----- ----- ----- ----- ----- ----- ----- ----- ----- ----- -----</p> <p>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 ----- -----</p> <p>1. ----- -----</p>

(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2. (생략)

③ ~ ⑩ (생략)

第12條(選舉管理) ① ~ ③ (생략)

<신설>

第13條(選舉區選舉管理) ①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選舉管理委員會(이하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號와 같다.

1. (생략)

2.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選舉와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議員(이하 “比例代表市·道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 (현행과 같음)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선거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규정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1. (현행과 같음)

2.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議員”이라 한다)選學의 選學
區選學事務는 市·道選學管理
委員會

3. (생략)

② ~ ⑥ (생략)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
회위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
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
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
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
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
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
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권) ①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
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
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
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
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② 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
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
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
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국
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에 국내거소신고
가 되어 있는 사람

3. (생략)

第16條(被選舉權) ① · ② (생략)

③ 選舉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舉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②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
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현행과 같음)

제16조(피선거권)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

3.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생략)

②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地域區國會議員·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舉·再選舉, 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舉는 前年度 10月 1일부터 3月 31일까지의 사이에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月中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月 1일부터 9月 30일까지의 사이에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月中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선거일)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이 경우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하고,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 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 ~ ⑧ (생략)

第52條(登録無效) ① 候補者登録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候補者의 登録은 無效로 한다.

1. ~ 10. (생략)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 ④ (생략)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

당 선박 선장의-----.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일 전 30일

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⑧ (생략)

<신설>

<신설>

⑨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비후보자의 당적 보유 여부를 정당에 요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정당은 이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⑩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이후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제49조제12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⑪ -----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
략)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
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
(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
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
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
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및
단서 신설>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
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
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
법, 그 밖에-----.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
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
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
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
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
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
로 같음할 수 있다.

⑤ -----

까지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 마감일까지 점자형 후보자정보 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⑩ ~ ⑬ (생략)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생략)

⑧ 제64조제3항·제8항 및 제65조제4항은 선거공약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 또는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공약서"로,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은 "작성할"로, "점자형 선거공보"는 "점자형 선거공약서"로 보며,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서와 같은 종류로 본다.

⑨ (생략)

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 ① ~ ⑦ (생략)

⑩ 候補者등이 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답을 하기 위하여

----- 있다.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65조 제4항(단서는 제외한다)-----

⑨ (현행과 같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답) ① ~ ⑦ (현행과 같음)

⑩ -----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錄音器 또는 錄音器(비디오 및 오디오 器機)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放送하거나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經歷·政見·活動狀況을 放送 또는 放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⑪ · ⑫ (생략)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 5. (생략)

6. 시·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선거

-----후보자와 선거연
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
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
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
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
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
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
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⑪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광역시장·특별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
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
×300원)

나. (생략)

7. ~ 9. (생략)

② · ③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
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1. (생략)

2. 제65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
공보(같은 조 제9항의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작성비용과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및 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를 포함한다) 및 전단형 선거
공보의 발송비용과 우편요금

3. (생략)

3의2.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

자치시장-----

나. (현행과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선거
공보-----

3. (현행과 같음)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

③ ~ ⑧ (생략)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 ⑫ (생략)

<신설>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3(선상투표) ① -----

-----기간(이하 “선상투표기간”이라 한다)-----

② ~ ⑫ (현행과 같음)

⑬ 선상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에 도착한 선상투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서 선상투표

1. · 2. (생략)
3. 2 이상의欄에 標를 한 것

4. ~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두 候補者欄의 區分線上에 記票된 것으로서 어느 候補者에게 記票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 10. (생략)
第181條(開票參觀) ① ~ ④ (생략)
<신 설>

⑤ ~ ⑨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란에 표를 한 것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10. (현행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게 된 때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궐선거등의 선거일이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4월 또는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선거기간개시일 전 4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보궐선거등과 함께 선거를 실시한다.

⑥ · ⑦ (생략)

第203條(同時選舉의 범위와 選舉

日) ① (생략)

②第35條(補闕選舉 등의 選舉日)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選舉 등이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때에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에 동시실시한다

1. · 2. (생략)

⑤ -----

-----4월
중 첫 번째 -----

-----그-----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

일) ① (현행과 같음)

②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補闕選舉 등 가운데 다음 各號의 補闕選舉 등은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에 동시 실시한다. 다만, 그 補闕選舉 등의 選舉日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選舉期間開始日전 40日부터 選舉日후 50日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부터 50日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補闕選舉 등(이하 이 條에서 “연기된 補闕選舉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연기된 補闕選舉 등의 選舉日전 30日까지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舉 등도 동시에 실시한다.

1.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전 40日내에 選舉日이 있는 補闕選舉 등
2.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전 30日까지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舉 등. 이 경우 당해 任期滿了에 의한

③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選舉의 選舉日 전 30日 후에 그 選舉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補闕選舉 등은 그 다음의 補闕 選舉 등의 選舉日에 실시한다.

<신 설>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④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선거일(제203조제3항에 따라 보궐선거등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을 말한다) 전 30일 후부터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한다.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호의 사항을 적고 자신의 여권 사본 및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략)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이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국외부재자신고서와 해당 구·시·군의 장이 직접 접수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려는 사람은 여권사본 및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사본을 덧붙이지 아니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① -----

 -----주소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 ③ (생략)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 ② (생략)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 (생략)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

④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① 재외선거의 투표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대통령선거에 한한다)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59조 본문에 따른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② (생략)

③ 재외선거인등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18조의17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보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을 위하여 제15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투표용지원고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 2일까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의 성명(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한한다)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封緘)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같은

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재외선거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책임위원”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글성명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한

조 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 국적 및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제1항에 따라 투표하여야 하며,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미리 적어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8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제218조의13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등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투표용지 교부, 투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교부한다.

③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재외선거인등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합·봉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8조의25(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3. 회송용 봉투가 봉합되지 아니한 것
4.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5.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아니한 것(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제외한다)
6.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로 적은 것[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併記)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제3항 및 제4항제7호·제10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는 “재외투표”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투표”로 본다.

본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그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③ (생략)

② 제218조의18제4항 후단의 방법으로 투표를 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본다)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한다)는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2.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회 이상 적은 것

2. 성명·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3. 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4. 재외선거인등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등의 투표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16제1항 단서에 따라 기표에 의한 방법으로 한 재외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79조를 준용한다.

제219조(선거소청) ①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選舉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選舉人·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

<삭 제>

<삭 제>

제219조(선거소청) ①-----

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候補者는 選舉日부터 14日 이내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 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②

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와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 ② (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나. (생략)

다. 제7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 외의 내용을 방송 또는 방영한 사람

라. ~ 거. (생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제79조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라. ~ 거. (현행과 같음)

2.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다. (생략)

라. 第161條(投票參觀)第7項
(제162조제4항 및 제181조제
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
여 參觀人이 되거나 되게
한 者

마. ~ 아. (생략)

3. · 4. (생략)

④ · ⑤ (생략)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생략)

<신설>

2. · 3. (생략)

④ ~ ⑦ (생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
을 위반하여 參觀人이 되거
나 되게 한 자

마. ~ 아.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제65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
여 접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
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다. (생략)

라.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自動車와 擴聲裝置에 標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마. · 바. (생략)

2의2. ~ 6. (생략)

⑨ ~ ⑪ (생략)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

⑧-----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79조제6항 또는 제10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동차, 확장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지-----

마. · 바. (현행과 같음)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①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

